

장만(張晩)의 군사 활동과 정치적 위상의 변동*

히태구**

〈차 례〉

1. 머리말
2. 광해군 대 장만의 官歷과 정치적 위상
3. 인조 대 장만의 군사 활동과 군비 강화책
4.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시기별 장만의 군사 활동과 업적을 정리하고, 이와 연관된 그의 정치적 위상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탐색한 연구이다. 광해군 대 후반 서인계 대부분이 몰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장만은 모호한 黨色과 탁월한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궁궐영건 사업과 심하 패전 이후 관서 지역의 위기 수습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굳게 다질 수 있었다. 인조 대에는 이괄의 난 발발로 잠시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적절한 대응으로 반란 진압에 성공하여 정치적 위상이 크게 상승하였다. 장만은 후금 방어를 위해 한정된 전력을 분산하지 말고 安州城과 江華島에 최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그는 병역 자원의 부족이라는 근본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인조 대 號牌法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주제어] 장만(張晩), 군사 활동, 정치적 위상, 궁궐영건, 號牌法

* 본 연구는 2019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1. 머리말

張晩(1566~1629)은 선조 24년(1591) 別試 문과에 급제하여 出仕한 문관 출신이지만, 선조·광해군·인조 대를 거치며 군사 및 외교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한 최고위급 관료 중 하나였다. 선조 대부터 수차례 변방 수령과 관찰사를 역임한 그는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군사·외교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1623년 인조반정 이후에도 그의 위상은 변동이 없어 인조 정권 하에서 도원수, 도체찰사, 병조 판서의 요직을 역임하면서 이괄의 난을 진압하고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처럼 장만은 명·청 교체기란 격동기에 조선의 국방정책 수립과 시행, 외교·군사적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지만 불과 수년전까지만 해도 그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기이하다 싶을 정도로 소략하였다. 우선 이 시기 인물 연구가 주로 李舜臣, 柳成龍, 李恒福, 李德馨, 光海君, 崔鳴吉 등의 특정 인물에 치우친 점을 그 이유로 거론할 수 있다. 아울러 광해군~인조 대 외교·군사적 대응의 포커스가 두 君主의 역량 對比라는 다소 결과론적 구도에 맞추어져 있었던 점도 연관이 있다. 그 결과 인조 대의 외교·군사적 대응은 실상보다 지나치게 폄하되거나 비난받기 일췌였고, 따라서 장만과 같이 양 시기를 거치며 외교·군사 분야에서 종사한 인물들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높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패권이 이동하는 혼란의 와중에 장만이 조선의 안보와 국방의 실무를 장기간 담당한 인물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정묘~병자호란 시기의 군사·외교사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장만에 대한 본격적 탐색은 이성무와 신병주의 개설적 연구,¹⁾ 장석규와 백상태의 평전 집필 등이 그 시발점이었다.²⁾ 이를 통하여 장만의 왕대별·

1) 이성무, 「장만-과도기 조선의 병권을 잡다」, 『명장열전-나라를 구한 사람들』, 청아출판사, 2011; 이성무, 6장 「장만 장군의 생애와 군공」, 『조선시대인물사』, 지식산업사, 2015; 신병주, 「文武兼全의 인물 張晩, 그 시대와 활동」, 『조선시대사학보』 64, 2013; 신병주, 29장 「위기의 시기, 국방의 최일선에 섰던 장만」, 『참모로 산다는 것-왕권과 신권의 대립 속 실제로 조선을 이끌어간 신하들의 이야기』, 매일경제신문사, 2019.

시기별 군사 활동과 기여, 장만의 가계와 친인척, 그 밖의 학맥·인맥 등이 상세히 밝혀졌다. 2018년에는 장만장군기념사업회의 주도로 그의 문집인 『洛西集』의 완역본이 간행되었고,³⁾ 2020년에는 열상고전연구회의 기획으로 장만의 삶을 다각도로 조명한 편저 『낙서 장만 연구』가 출간되었다.⁴⁾ 장만의 사위 최명길의 일생을 다룬 평전에서도 장만의 정치·군사·외교 활동에 대한 소략하지만 통찰력 있는 정리가 이루어졌다.⁵⁾ 이와 같은 선행 연구에 힘입어 장만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적 정리는 완료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군사·외교적 기획과 활동, 정치적 위상의 건재 요인, 대외인식 및 정세 분석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더 천착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장만의 출세 배경으로 그의 실무적 능력과 더불어 서인 李恒福 등과의 인연을 빠짐없이 언급하였지만, 이항복 실각 이후에도 건재하였던 장만의 정치적 위상과 그 변동 요인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거나 평면적인 서술에 그치고 만 느낌이다. 광해군 대 말엽 장만이 집중적으로 올린 궁궐영건 반대 상소에 가리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실 그는 심하 패전 이후에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광해군이 변경 업무 총괄을 목적으로 한 그의 차출을 거부할 정도로 궁궐영건 사업의 추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핵심 실무 관료였다(후술). 이와 같은 점은 서인 몰락 이후에도 그가 국왕의 신임을 잃지 않고 건재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⁶⁾ 인조 대에 시도되었다가 정묘호란 직후 좌초된 號牌法 시행에 그

2) 장석규 편, 『팔도도원수 장만장군』, 도서출판 기창, 2009; 백상태·장석규, 『문무겸전의 전략가-장만(張晩) 평전』, 주류성, 2018; 장석규, 『광해의 중립외교와 장만장군-조선 전정시대 45년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까지』, 보고사, 2019.

3) 장만著·번역위원회譯, 『洛西集 번역본』, 장만장군기념사업회, 2018.

4) 계승범, 「정묘호란의 동인 계고」, 『열상고전연구』 71, 2020; 권혁래, 「낙서 장만의 심하전투 관련 차자(箭子) 연구」, 『淵民學志』 34, 2020; 김준, 「낙서 장만 시조의 해석과 수용 양상에 대한 소고(小考)」, 『淵民學志』 34, 2020; 신두환, 「낙서(洛西) 장만(張晩)의 상소문 연구」, 『淵民學志』 34, 2020; 심경호, 「낙서와 지천 최명길의 창수(唱酬) 및 지천의 서찰에 관하여」, 『열상고전연구』 71, 2020; 허경진·심경호·구지현·계승범·박제광·신두환·권혁래·김준, 『낙서 장만 연구』, 보고사, 2020.

5) 한명기, 제2장 「최명길에 큰 영향을 남긴 사람들-장인 장만」, 『최명길 평전』, 보리, 2019, 77~90쪽.

가 깊숙이 관여한 사실 역시 관련 사료의 부족으로 크게 주목되지 않았다. 나아가 장만이 일찍부터 오랑캐의 침입을 예고하고 그 대비책을 모색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의 군비 강화책이 갖는 의미와 한계 등에 대해서는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광해군~인조 대의 최고위급 군사·외교 전문가로 활약한 장만의 군사 활동 및 이와 연관된 정치적 위상의 변동에 대해 본격적 탐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낙서집』과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각종 관·사찬 사료를 활용하되 그동안 선행 연구에서는 활용되지 않은 부분을 발굴하여 장만의 시선과 목소리를 중심으로 당대의 정치·군사상을 복원할 예정이다. 본 논문의 제1장에서는 광해군 대 장만의 官歷 및 정치·군사 활동을 고찰하여 서인 몰락 이후에도 건재하였던 그의 정치적 위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예비적 탐색으로 그의 정치적 성향과 자질 등에 대해서도 간략히 검토해보겠다. 이어서 제2장에서는 인조 대를 중심으로 그의 군사적 활동을 살펴보고,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여 그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실현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그가 수립한 군비 강화책의 특징과 함께 여기에 내포된 문제와 한계점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해보겠다.

2. 광해군 대 장만의 官歷과 정치적 위상

장만의 본관은 仁同이다. 字는 好古, 號는 洛西, 시호는 忠定이다.⁷⁾ 명종 21년(1566) 10월 14일 아버지 張麒禎과 어머니 白川趙氏 사이에서 6남 3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⁸⁾ 할아버지는 議政府 舍人(정4품)을 지낸 張季文

6) 이와 같은 점은 이미 한명기, 앞의 책, 2019, 83쪽에서 간략하게나마 언급되었다.

7) 이하 서술한 장만의 가계, 관력 등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였다. 이성무, 앞의 책, 2015; 신병주, 앞의 논문, 2013; 백상태·장석규, 앞의 책, 2018.

8) 장만의 출생지가 어디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성무와 백상태·장석규는 한양으로 신병주와 한명기는 김포 通津으로 기술하였으나 근거가 되는 원전 자료를 필자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고, 외할아버지는 訓練院 奉事(종8품)였던 趙光琛이었다. 장만의 조부 장계문은 權慄의 아버지 權轍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장기정을 따라 어린 나이의 장만도 권철의 집에 드나들면서 권율과 그의 사위 李恒福(1566~1618)을 만나게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장만은 이항복의 이웃집에 살며 교분을 나누었는데, 그를 통하여 申欽(1566~1628), 鄭忠信(1576~1636), 崔鳴吉(1586~1647)을 알게 되었다. 신흙은 月·象·谿·澤으로 이름을 떨친 漢文四大家⁹⁾ 가운데 하나였고, 정충신은 이항복의 수양아들과 같은 武臣이었다. 최명길은 이항복의 門下였으며 그의 아버지 崔起南과 장만은 성균관에서 동문수학한 사이였다. 장만은 자신의 외동딸을 최명길에게 출가시켰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그의 인맥은 서인계와 종횡으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정치적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낸 인물은 아니었다. 일단 봉당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인 명확한 師承 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受學은 家學이나 官學을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출사 초기의 정치적 발언이나 행적도 서인으로서의 黨色을 드러냈다고 보기 힘들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선조 30년(1597년) 3월과 4월 사이 사헌부와 사간원은 黃廷彥을 방면하라는 명을 거두어 달라는 청을 거듭 국왕에게 올렸다. 이때 사간원 正言 장만도 참여하였다.¹⁰⁾ 서인계 황정욱은 아들과 함께 임진왜란 당시 함경도 회령에서 가토 키요마사[加藤清正]의 포로가 되었다가 선조에게 보내는 항복 권유문을 작성했다고 알려져 비난을 받은 인물이다. 당시 황정욱 부자의 방면 여부는 동·서 대립의 치열한 정치 현안이었다. 같은 해 4월에는 己丑獄死로 억울하게 죽은 북인계 인물들의 신원을 사간원 동료들과 함께 간언하였다.¹¹⁾ 이어 12월에는 사헌부 持平으로 동인계 좌의정 金應南의 때 이른 遞職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였다.¹²⁾ 아래 보이는 실록

9) 月沙 李廷龜, 象村 신흙, 谿谷 張維, 澤堂 李植 4인을 가리킨다.

10) 『선조실록』 권86, 선조 30년 3월 庚子(10일); 『선조실록』 권86, 선조 30년 3월 壬寅(12일); 『선조실록』 권87, 선조 30년 4월 辛酉(1일).

11) 『선조실록』 권87, 선조 30년 4월 壬申(12일) “大司諫申湜 獻納權愷 正言張晩啓曰 己丑逆變時 枉死之人 至今未蒙昭雪 此固人心之所共鬱抑 而臣等待罪言地 不能導達公論 顯被多士之譏 循默隱忍之失 在所難免 請命罷斥臣等之職 答曰 勿辭【退待物論】”.

12) 『선조실록』 권95, 선조 30년 12월 丁卯(11일).

의 사론은 이러한 장만의 ‘無色無臭하고 온건한’ 또 달리 보면 ‘세태에 휩쓸려 우유부단하고 출세지향적인’ 그의 정치적 성향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벼슬길에 처음 나올 때부터 마음에 쏘리어 따라잡이 바르지 못하여 사람들이 부족하게 여겼다.¹³⁾

세태를 따라 浮沈하여 전혀 定見이 없었다.¹⁴⁾

사람됨이 결단력이 없어 일을 의논함에 可否가 없었다.¹⁵⁾

반면, 이미 여러 선행 연구에서 강조하였듯이 장만의 현장 실무 관료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은 매우 뛰어났다.¹⁶⁾ 게다가 그는 문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군사 업무에 남다른 흥미와 재주가 있었다.¹⁷⁾ 이러한 그의 자질이 당대의 까다로운 도학적 기준에 부합하거나 또는 탁월한 문장력으로 명성을 떨치기에는 부족했지만, 전란의 수습과 복구 그리고 다가오는 건주여진의 흥기라는 사태를 대비하는 데에는 매우 적합하였다. 장만은 선조 31년(1598) 봉산 군수로 재직하며 까다로운 명군의 접대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선조의 인정을 받아¹⁸⁾ 충청·전라·함경도 관찰사의 외직과 도승지·대사간·형조 참관·병조 참관·호조 참관의 내직 등을 두루 거쳤다. 도체찰사로 군사 업무를 총괄한 이항복의 후원도 영향을 미쳤으나,¹⁹⁾ 광해군 역시 세자 시절

13) 『선조실록』 권87, 선조 30년 4월 辛酉(1일).

14) 『선조실록』 권204, 선조 39년 10월 己亥(4일).

15) 『선조실록』 권142, 선조 34년 10월 丁丑(13일).

16) 이후 언급한 장만의 관력과 행적은 신병주, 앞의 논문, 2013, 8~15쪽; 한명기, 앞의 책, 2019, 77~90쪽을 참조.

17) 張晩, 『洛西集』 권3, 疏筭「辭都體察使筭」“臣本以謏薄 素乏智慮 特以少時 家在牧場之傍 粗解弓馬之技 故得名於曉知武事 受任邊疆 終忝元帥”.

18) 『선조실록』 권114, 선조 32년 6월 庚子(23일) “傳于政院曰 鳳山郡守張晩 善治民 盡心國事 特陞堂上”.

19) 『광해군일기』 권37, 광해군 3년 1월 辛酉(20일) “備邊司啓曰 問于都體察使 則云 柳珩一身擔當 夙夜盡心 其所布置之事極多 一朝代以他手 盡將渙散 機關甚重 臣之愚意 非張晩 難得緊收殺”; 崔鳴吉, 『遲川集』 권19, 行狀 附碑誌「玉城府院君贈諡忠定公張公行狀」“時朝廷憂在西鄙 會西園缺 白

侍講院에서 司書를 맡았던²⁰⁾ 장만을 중용하였다. 국왕은 그의 함경도 관찰사 사직을 만류하였고,²¹⁾ 이후 비변사의 南邊舟師句管堂上,²²⁾ 평안도 병마절도사, 경상도 관찰사 등의 중임을 맡겼다. 다음 실록의 인물평은 공통적으로 장만의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이 그의 發身을 가능케 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음을 지적하고 있어 흥미롭다.

士林의 淸望과 文章 및 籌略은 없었으나 범상한 인품으로서는 자못 재능과 국량이 있어서 登第한 지 10년만에 方伯이 되었으며 湖西에서도 직책을 제대로 완수했다고 알려졌다.²³⁾

사람됨이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다스림에 치적이 있었다.²⁴⁾

광해군은 일머리 있고 유능한 장만에게 변경 업무를 맡겼을 뿐만 아니라, 재위 기간 자신이 가장 역점을 기울인 궁궐영건 사업에 중용하였다.²⁵⁾ 그간 선행 연구에서는 궁궐영건을 반대한 광해군 대 재위 후반 장만의 행적만을 부각하였지만,²⁶⁾ 사실 이러한 그의 언행은 광해군 11년(1619) 3월 溟河 전투 전 명나라의 원병 파견 요청이 나온 직후부터였다.²⁷⁾ 더구나 당시 신료들의 궁궐영건 반대 상소는 원병 파병을 주저하는 국왕을 설득하는 맥락 속에

沙意屬公而未知公意 使人探公 公卽欣然應之 遂爲平安道兵馬節度使 至則改西路軍制 因時制宜 咸有條理 西民稱便”. 이하 본고에서 인용한 『광해군일기』는 太白山史庫의 中草本이다.

20) 『선조실록』 권93, 선조 30년 10월 癸酉(16일).

21) 『광해군일기』 권27, 광해군 2년 윤3월 丁卯(22일).

22) 『광해군일기』 권36, 광해군 2년 12월 己丑(18일); 『광해군일기』 권36, 광해군 2년 12월 癸巳(22일).

23) 『선조실록』 권131, 선조 33년 11월 壬子(12일).

24) 『선조실록』 권174, 선조 37년 5월 庚午(20일).

25) 『광해군일기』 권126, 광해군 10년 4월 己亥(10일) “臣沖 臣晩 臣瓘等 俱以米布次知提調 所掌最緊 完事之期 茫無畔岸”; 『광해군일기』 권129, 광해군 10년 6월 己未(2일) “知事張晩啓曰 臣自春初 大病之後 思慮茫然 遇事昏眩 而於備局則忝冒有司 於都監則兼掌布物燔瓦 近來虜情巨測 戎事方殷 文書酬應 料理邊務 一刻爲急 都監布物 垂盡 兩處之事 紛沓 杳如此 驅策老病之身 決難兼察 都監備局中一處 伏乞遞差 以便公私 惶恐敢啓”.

26) 신병주, 앞의 논문, 2013, 24~25쪽; 백상태·장석규, 앞의 책, 2018, 297~300쪽.

27) 『광해군일기』 권126, 광해군 10년 4월 己亥(10일); 『광해군일기』 권128, 광해군 10년 5월 壬寅(15일); 『광해군일기』 권129, 광해군 10년 6월 壬申(15일) 등.

작성된 것이 다수였다.²⁸⁾ 장만의 반대 상소에 대해 궁궐영건 사업 초기에는 왜 반발하지 않았느냐는 광해군의 반문은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한다.²⁹⁾ 요컨대, 장만은 궁궐영건 사업 초·중반기 광해군을 보좌한 핵심 신료였던 것이다. 이러한 관계와 정황을 놓치면 서인의 리더였던 이항복 실각 이후에도 건재하였던 장만의 정치적 입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다음 광해군의 발언은 그간 간과되었던 궁궐영건 사업에서 장만이 차지하였던 비중을 엿보게 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궁궐을 짓는 일이 하루가 급한데, 提調 중에 전말을 상세히 알고 감독하는 데에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불행히 李洵마저 병이 위중해져 장만이 있을 뿐이니, 절대로 내보낼 수 없다. 다른 사람을 흘려보내어 낙점을 받아 차송하라.³⁰⁾

이충이 죽은 데에다가 沈惇과 장만마저 잇따라 나가게 되었으니 영건에 관한 일이 매우 한심스럽다. 우선 金薰國과 崔瓘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신 보게 하라.³¹⁾

위의 사료에 언급된 이충은 繕修都監提調와 호조 판서를 역임하며 광해군 대 궁궐영건 사업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었다.³²⁾ 당시 비변사는 심하 원정에 참여한 조선군을 서북면에서 지원·감독하는 역할에 體察副使 장만을 적임자로 추천했지만³³⁾ 광해군은 궁궐영건 사업에 지장을 줄까 우려하여 그의 차출을 거부하다가 끝내 수락하였던 것이다. 위의 사료를 보면 이충 부재시

28) 『광해군일기』 권129, 광해군 10년 6월 癸亥(6일) “答曰…近以請停此役 爭相啓筭 如予昏病之人 不得察見 更觀西報 自當酌處矣 今日在廷諸臣 豈無防胡計策 唯以陳啓沽直 歸惡名於君上 爲一生事業 大官倡之 臺諫和之 卿不必又效此態也”.

29) 『광해군일기』 권178, 광해군 14년 6월 癸巳(29일) “兵曹判書張晩上筭辭職 因陳便宜 且言兩闕之役 怨讎非時 答曰 勿辭 秋節已迫 虜騎益張 卿既知國事危急 則何不上來而退有大言乎 營建事 卿意如此 則何不言於戊午變生之初 今已垂成 難棄前功”.

30) 『광해군일기』 권137, 광해군 11년 2월 乙亥(21일).

31) 『광해군일기』 권138, 광해군 11년 3월 丁酉(14일).

32) 홍석주·박언곤, 『光海君代의 宮闕營建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8-4, 1999, 30~31쪽 참조.

33) 『광해군일기』 권138, 광해군 11년 3월 丙申(13일).

의 궁궐영건 업무의 책임자로 장만이 최우선 순위로 언급되는 정황을 엿볼 수 있다. 파병 준비가 한창인 광해군 11년(1619) 1월 장만이 형조 판서에 임명된 사실은, 궁궐영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국왕이 그를 변경에 보내지 않고 한양에 두려했다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³⁴⁾ 그렇다면 복인계의 독주라는 정치 현실 속에서 광해군의 반대마저 무릅쓰고 파병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장만을 체찰 부사로 추천 또는 적어도 묵인한 정권의 실세는 누구였을까?

당시 장만의 오랜 후원자인 이항복은 北靑에 定配중이라 비변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³⁵⁾ 이항복을 비롯한 서인계는 광해군 4년(1612) 金直哉의 옥사, 다음해 3월 癸丑獄事, 광해군 10년(1618) 1월 廢母 庭請을 거치며 큰 타격을 입어 정계의 영향력을 상실한 상황이었다.³⁶⁾ 사위 최명길 역시 李爾瞻의 배척을 받아 관작을 삭탈당하고 門外出送된 지 오래 전이었고,³⁷⁾ 장만 자신도 광해군 8년(1616) 해주 목사 崔沂의 誣獄에 연루되어 李貴와 함께 고초를 겪은 바 있었다.³⁸⁾ 그러므로 폐모 정청에 형식적으로나마 참여한 이력에도 불구하고,³⁹⁾ 장만의 정치적 지위는 불안한 측면이 없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항복의 뒤를 이어 국왕의 절대적 신임 속에 광해군 10년(1618) 후반기부터 비변사를 장악해 간 인물은 戚臣 朴承宗이었다.⁴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장만이 서인계의 퇴조라는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정치적 지위를 유지한 데에는 그의 武才와 備邊 능력 및 국왕의 절대적 신임과 더불어 박승종의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 또한 작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짐작된다. 이이첨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인계에 우호적이었던 박승종의 정치적

34) 『광해군일기』 권136, 광해군 11년 1월 庚寅(6일).

35) 『광해군일기』 권123, 광해군 10년 1월 丙寅(6일).

36) 허태구, 「광해군 대 박승종(朴承宗)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인식」, 『한국학연구』 60, 2021, 258~261쪽 참조.

37) 『광해군일기』 권74, 광해군 6년 1월 丁卯(14일); 『광해군일기』 권74, 광해군 6년 1월 辛巳(28일).

38) 李肯翬, 『燃藜室記述』 권21, 廢主光海君故事本末 「崔沂海州之獄」, 「院啓 戶曹參判張晩 海州之發 先往賊沂家 議搆招草 請削黜」.

39) 『광해군일기』 권121, 광해군 9년 11월 丙戌(25일).

40) 허태구, 앞의 논문, 2021, 261~268쪽 참조.

성향,⁴¹⁾ 국방 현안에 대한 이항복과 박승종의 공감대,⁴²⁾ 궁궐영건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알려진 박승종의 前歷⁴³⁾ 등은 이상의 추론을 방증한다. 장만의 형조 판서 임명에 부기된 실록의 사론은 서인 실각 후에도 이례적으로 견제 하였던 장만의 정치적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장만은 백성을 보살피고 통솔하는 재능이 있었으므로 지난날 근무하던 곳마다 명성이 있었고, 심돈도 재능이 있어 드러나게 등용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어지러운 세상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비굴하게 남의 비위를 맞추다가 끝내는 구차스럽게 용납되었으니, 애석한 일이다.⁴⁴⁾

궁궐영건 사업과 더불어 장만의 정치적 위상을 유지시켜준 또 하나의 요인은 심하 전투 전후로 배가된 서북변의 안보 위기였다.⁴⁵⁾ 명이라는 든든한 보호막이 얇어진 상태에서 조선은 서북변의 광활한 국경을 후금이란 강력한 적과 마주하게 되었다. 후금의 요동 공략이 거세어질수록 관서·의주 지역의 위기감은 고조되었는데,⁴⁶⁾ 이러한 민심을 수습하고 후금의 군사적·외교적 도발에 대비하는 것이 심하 패전 이후 조선이 당면한 최우선의 국정 과제였다. 조·명 연합군의 원정이 가시화되는 광해군 10년(1618) 6월 무렵부터 국왕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관망적이고 양단적인 외교 노선을 지지해줄 수 있는 노련한 인물로 외교·군사 라인을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박승종이 우의정·좌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영의정과 西北道都體察使를 겸직하며 외교·군사 업무를 중심으로 한 광해군 대 후반의 국

41) 허태구, 앞의 논문, 2021, 259쪽.

42) 허태구, 앞의 논문, 2021, 262쪽.

43) 『광해군일기』 권157, 광해군 12년 10월 庚申(17일) “爾瞻 希奮 承宗三人者 皆以肺腑用事 逆獄皆出爾瞻 而賣官鬻獄 起於希奮 營建宮室 自承宗云”.

44) 『광해군일기』 권136, 광해군 11년 1월 庚寅(6일).

45) 한명기, 앞의 책, 2019, 83~85쪽 참조.

46) 『광해군일기』 권139, 광해군 11년 4월 壬申(19일) “傳曰 以張晚書狀見之 則兇賊之搶犯遼陽必矣 遼薊若危 則義州有何所恃乎”; 『광해군일기』 권142, 광해군 11년 7월 戊子(7일) “備邊司啓曰…此賊兵力 未知如何 而天朝十萬兵 一舉塗地 遼陽三大鎮 連次見陷 關以外 已無虜目中矣 我國之憂 爲如何哉”.

정을 총괄하게 되었다.⁴⁷⁾ 이 무렵 장만도 體察副使에 임명되었는데,⁴⁸⁾ 그의 임무는 도체찰사를 보좌하는 한편 유사시에는 도성에 있는 국왕과 도체찰사를 대신하여 변경에 나아가 그곳의 장수와 지방관을 효율적으로 지휘하는 것이었다.⁴⁹⁾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선조 34년(1601) 6월 도승지와 좌승지로 호흡을 맞추었던 장만과 박승종이 이제는 상하를 바꾸어 체찰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⁵⁰⁾ 아울러 원병 파병 논의시 국왕인 자신의 입장을 지지한 박승종의 아들 朴自興을 비롯하여 尹暉와 任亮을 비변사 당상에 임명하였다.⁵¹⁾ 나아가 광해군의 최측근으로 인조반정 후 처단되었던 鄭遵을 의주 부윤으로,⁵²⁾ 朴燁을 평안 감사에 임명하였다.⁵³⁾ 심하 전투에 참전하는 조선군을 총지휘한 都元帥 姜弘立은 장만과 어린 시절 같은 마을에 살아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⁵⁴⁾ 도체찰사 박승종 역시 심하 전투에서 순절한 左助防將 金應河를 비롯하여 당대의 유명한 무장들과 각각의 인연으로 연결된 인물이었다.⁵⁵⁾ 요컨대, 광해군은 심하 전투 전후 국왕을 정점으로 하여 영의정겸도체찰사 박승종, 체찰 부사 장만, 평안도 관찰사 박엽, 의주 부윤 정준 등으로 이어지는 인적 체계를 구축하여 서북변의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시 광해군이 서인계 장만을 유독 중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항복·이덕형처럼 경험 많은 원로가 비변사에 不在하고,⁵⁶⁾ 최측근이자

47) 허태구, 앞의 논문, 2021, 261·267쪽.

48) 『광해군일기』 권129, 광해군 10년 6월 庚午(13일) “傳曰 都體察使 既已啓下 副體察使 以張晩除授使與都體察使 同議料理事 言于備邊司”.

49) 『광해군일기』 권130, 광해군 10년 7월 壬辰(6일) “備邊司啓曰…體察使則以大臣兼之 而又出副使以貳之 在京開府 料理籌劃 或送副使于邊上 使之上承體府 下應元節 豈可以大小將領 同率軍兵 入往繼援乎”.

50) 『선조실록』 권138, 선조 34년 6월 甲午(28일); 『선조실록』 권140, 선조 34년 8월 戊子(23일) “都承旨張晩免【以病呈遞】”.

51) 『비변사등록』 2책, 광해군 10년 5월 30일.

52) 『광해군일기』 권130, 광해군 10년 7월 己亥(13일).

53) 『광해군일기』 권132, 광해군 10년 9월 癸丑(28일).

54) 『광해군일기』 권142, 광해군 11년 7월 戊戌(17일); 張晩, 『洛西集』 권4, 書 『與姜弘立』.

55) 허태구, 앞의 논문, 2021, 268쪽.

56) 『광해군일기』 권139, 광해군 11년 4월 辛酉(8일) “傳曰…嗟嗟 廟堂訃謨老成之才 則斥逐殆盡 使不得預聞 年少生疎之人 多入於備局 謀國不臧 無足怪也”.

권력의 실세인 이이첨과 유희분이 국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생사를 건 전투를 벌이는 상황 속에서 광해군의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게다가 이 두 戚臣은 박승종과 달리 국왕의 외교 노선에 앞장 서 반발하고 있었다.⁵⁷⁾ 그리하여 광해군은 외교·군사 업무에 조예가 깊어 신망이 높은 박승종과 장만을 비상시의 군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體察府의 수뇌진에 포진시켰던 것이다. 특히 장만은 4년의 함경도 관찰사 재임 기간 동안 여진족을 상대하면서 민심의 지지를 잃지 않고 軍政을 정비하는 데 성공한 인물이었다.⁵⁸⁾ 이정귀와 李時發의 기용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비상시국에서는 죄를 지은 인물의 등용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⁵⁹⁾ 복인계가 아니었던 장만의 정치 성향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장만은 우선 흑시 모를 후금의 무력 도발을 대비하는 데 주력하였다. 최전방인 의주 지역의 포수와 군량을 보충하였고,⁶⁰⁾ 적의 침입이 예상되는 昌城郡으로 兵馬節度使의 行營을 옮겨 방비를 강화하였으며,⁶¹⁾ 압록강변과 황해도 지역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였다.⁶²⁾ 그래도 부족한 병력과 군량은 下三道 등지의 赴防을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⁶³⁾ 당시 장만이 방어를 위해 조정에 요청했던 군사의 수는 5만 명 정도였다.⁶⁴⁾ 아울러 관서 지방의 수령을 모두 무장으로 임명하도록 조치하는 한편,⁶⁵⁾ 변경의 요충지에는 防禦使·助防將·別將으로 鄭起龍, 南以興, 李琰과 같은 將材가 있는 인물의 임명을 건

57) 허태구, 「李爾瞻의 斥和論과 對明義理」, 『서강인문논총』 59, 2020, 12~23쪽 참조.

58) 신병주, 앞의 논문, 2013, 13~14쪽; 車天輅, 『五山集』 권5, 疏章 「代威鏡道儒生請留監司張晚 俾城威興外城疏」 “方今大計 欲防寇敵 必增威城 欲增威城 必仗張晚 蓋張晚廉平勤敏 甚得民心 民之愛信有如父母 瓜滿之後 聖上雖從民願而暫借 自以當違仍留”.

59) 『광해군일기』 권145, 광해군 11년 10월 壬子(3일) “答曰…今此辨誣, 必須擇用華國手段, 李廷龜, 先朝亦嘗善爲辨誣, 以此差上使, 而副使則以尹暉差送…【時 廷龜不參廢母廷請 兩司請遠竄 待命于國門之外 起廢以遣】”; 『광해군일기』 권146, 광해군 11년 11월 癸卯(24일) “備局以李時發曉諭邊務 請賞罪用之【時發不參庭請 待罪門外 而西事日急 故有此啓】”.

60) 『광해군일기』 권139, 광해군 11년 4월 癸酉(20일).

61) 崔鳴吉, 『遲川集』 권19, 行狀 「玉城府院君贈諡忠定公張公行狀」.

62) 『광해군일기』 권142, 광해군 11년 7월 辛卯(10일).

63) 『광해군일기』 권142, 광해군 11년 7월 甲辰(23일).

64) 『광해군일기』 권144, 광해군 11년 9월 丙午(27일) “備邊司啓曰 備忘記 大概張晚引見時 以爲添兵五萬可守云 添兵五萬 雖不得一時調入 四萬則勿減 急急調發 入送關西”.

65) 『광해군일기』 권149, 광해군 12년 2월 乙亥(27일).

의하였으며,⁶⁶⁾ 변방 수령의賢否를 판단하여 백성들에 대한 침탈을 방지하기도 하였다.⁶⁷⁾ 심하 전투로 인해 초토화된 관서 지역의 민심을 위로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국방 못지않게 중요한 체찰 부사의 소임이었다.⁶⁸⁾ 구체적으로 보면 심하 패전으로 죽은 병사들을 기록하고 恤典을 시행하는 일,⁶⁹⁾ 遺族의 마음을 위로하고 勸農을 장려하는 일,⁷⁰⁾ 후금에 포로가 되었다가 도주해 돌아온 병사들을 수습하는 일,⁷¹⁾ 지친 백성들의 民役을 덜어주는 일⁷²⁾ 등이 그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심하 전투 이후 긴장 속에 지속된 조선과 후금의 외교 교섭을 고위급 문신 관료로서 일선에서 감독하고 대응하는 것 역시 그의 임무였다.⁷³⁾ 국교 수립 이전의 교섭은 국왕의 정식 사행이 아닌 평안도 관찰사나 의주 부윤과 같은 지방관 명의의 문서나 口頭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⁷⁴⁾

요컨대 이 시기 장만은 국왕을 대리하여 관서 지역의 軍政·民政·外交를 현장에서 총괄하는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각각의 임무에 뛰어난 인재는 없지 않았겠지만, 이 모두를 종합하는 文武兼全의 능력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가진 최고위급 관료는 대부분 중앙의 文官職을 선호하는 풍토 속에서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사료는 단편적이지만 체찰 부사로 동분서주하였던 장만의 일상을 보여주는 데 부족함이 없다.

66) 『광해군일기』 권144, 광해군 11년 9월 丁亥(8일).

67) 『광해군일기』 권140, 광해군 11년 5월 己丑(7일); 『광해군일기』 권152, 광해군 12년 5월 辛丑(24일).

68) 張晩, 『洛西集』 권2, 疏劄 「辭副體察使兼論軍政劄」, “竊念本道之事…自江上一帶 以及雲山熙川德川价川龜泰郭山之間 幾至一空 其他郡邑 亦已十亡六七 及其兵敗之後 滿萬丁壯 盡沒於鋒鏑 野哭啾啾 至今不絕 氣像愁慘 人無生意 加以今年夏 旱水田全不耕種 旱田蝗蝻 大命近止 本道之事 雖謂之無可奈何可矣”.

69) 『광해군일기』 권140, 광해군 11년 5월 己酉(27일); 『광해군일기』 권142, 광해군 11년 7월 甲午(13일).

70) 『광해군일기』 권138, 광해군 11년 3월 丁未(24일).

71) 『광해군일기』 권142, 광해군 11년 7월 己丑(8일).

72) 『광해군일기』 권142, 광해군 11년 7월 戊子(7일).

73) 『광해군일기』 권139, 광해군 11년 4월 壬午(29일); 『광해군일기』 권142, 광해군 11년 7월 乙未(14일); 『광해군일기』 권150, 광해군 12년 3월 壬午(4일) 등.

74) 심하 전투 이후 조선과 후금 사이의 교섭 과정은 장정수, 『17세기 전반 조선과 후금·청의 國交 수립 과정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196~268쪽 참조.

비변사가 “체찰 부사 장만이 이미 한 食頃의 거리에 도착하여 있는데, 그가 직접 아뢰어야 할 軍務의 일도 반드시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胡書를 상의하는 일과 마침 서로 겹쳤으니 그를 올라오게 하여 하루나 이틀 정도 경과한 후에 다시 내려가게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기에 감히 아뢰니.”라고 아뢰니 (상이) 따랐다.⁷⁵⁾

관서 지역의 전후 수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장만은 광해군 13년(1621) 윤2월 드디어 병조 판서에 제수되었다.⁷⁶⁾ 대다수 서인계의 정치적 입지가 궁색한 상황 속에서 이례적 승진이었으며 광해군의 절대적 신임 없이는 불가능한 조치였다.⁷⁷⁾ 그러나 장만은 심하 패전의 파장이 어느 정도 수습된 광해군 12년(1620)부터 稱病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사직 상소를 올리는 동시에 궁궐영건 사업에 대한 반대 의사 역시 반복적으로 표출하였다.⁷⁸⁾ 장만의 『행장』에는 국왕의昏暗과 정사의紊亂에 대한 그의 불만이 정계 은퇴의 이유로 기술되었지만⁷⁹⁾ 충분한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유독 이 시기의 통치만 어지러웠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사직 사유로 언급된 그의 병환이 생각보다 심각했음을 보여주는 기록도 남아 있다.⁸⁰⁾ 인조반정 후 도원수에 임명된 장만의 건강을 배려하여 그가 변경이 아닌 내지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황해도 병마절도사를 겸직시키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⁸¹⁾

75) 『광해군일기』 권142, 광해군 11년 7월 丁酉(16일).

76) 『광해군일기』 권162, 광해군 13년 윤2월 乙酉(13일).

77) 『광해군일기』 권12, 인조 4년 3월 辛未(28일) “【史臣曰 晚爲人多智 行事不正 廢朝時攀援宮禁 恩寵隆盛 至拜兵曹判書 且參廢母庭請 僭流賤之 反正後 以崔鳴吉之婦翁 獨免罪罰】”.

78) 신병주, 앞의 논문, 2013, 24~25쪽 참조.

79) 崔鳴吉, 『遲川集』 권19, 行狀 「玉城府院君贈諡忠定公張公行狀」 “辛酉拜兵曹判書 時昏亂日甚 倖門大開 公獨操持公道 掃絕請托 權貴皆側目 而公不爲變 公知世道已不可爲 遂決意長往 壬戌受由沐浴 平山 盡室而行 上萬言疏 議切時政 尤懇懇於土木之弊 光海見之怒甚 自平山歸通津農舍 堅臥不起”.

80) 『광해군일기』 권150, 광해군 12년 3월 癸卯(25일) “備邊司啓曰…今聞張晚病勢日益危重 食飲全廢 形容盡脫 前冬則猶有蘇復之望 而入春以來 比前轉劇 往來之人見之者 皆以爲必死”; 『광해군일기』 권167, 광해군 13년 7월 壬子(13일) “備邊司啓曰 兵曹判書張晚受任西路 勞悴已極 近來又得他疾 一向危篤 生全無期 況望出仕” 등.

81) 『인조실록』 권3, 인조 1년 윤10월 丙午(20일) “備邊司啓曰…且以都元帥兼黃海兵使者 蓋爲張晚調病之便 而非但晚累次控辭 精力亦難兼察 今宜別出兵使 而李楹可堪差送”.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반정이 일어날 때까지 광해군은 장만에게 의지하려고 했고 장만 또한 광해군과의 관계를 과감하게 정리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⁸²⁾ 또 하나의 이유로는 인조반정과의 연관성을 거론할 수 있다. 장만이 靖社功臣에 錄勳되지 않은 사실만 떠올려 보아도 그가 인조반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다만 정사공신 1등으로 녹훈된 최명길의 장인이었던 그가 政變의 조짐을 어느 정도 눈치 채고 묵인했음을 짐작케 하는 기록도 많다.⁸³⁾ 요컨대, 광해군의 知遇와 주변의 정변 모의 사이에서 고심하던 장만이 사직이라는 타협점을 찾았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⁸⁴⁾

3. 인조 대 장만의 군사 활동과 군비 강화책

정변 참여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장만은 인조 1년(1623) 3월 도원수에 제수되어 정치적 재기에 성공하였다.⁸⁵⁾ 반정이 3월 13일에 일어났는데 도원수 임명 일자가 3월 25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꽤 신속한 결정이었다. 외교·군사 업무에 대한 검증된 실력과 풍부한 경험, 이항복의 인맥으로 연결되는 여러 반정공신과의 친분,⁸⁶⁾ 광해군 대 말엽의 辭職과 退去,⁸⁷⁾ 외교 노선의 조정에 따라 예상되는 후금과의 긴장 고조라는 요인은

82) 한명기, 앞의 책, 2019, 85쪽.

83) 신병주, 앞의 논문, 2013, 26쪽; 『인조실록』 권3, 인조 1년 윤10월 乙巳(19일) “上引見金鑿以下於文政殿…貴曰 張晩西行 見臣於平山 臣言及時事 晩頗以臣言爲是 及聞義舉 深以爲喜 畫策亦多 鑿曰 晩雖預知 至參正勳 則過矣”; 崔鳴吉, 『遲川續集』 권3, 『上洛西先生書』, “君視臣如草芥 則臣視君如仇讐之訓 又垂鄒書矣 而況今日之事 非但臣如草芥 又非虐我而已也 先王舊臣次第盡逐 先王愛子 無罪爆殺 先王后妃 廢處西宮 其外不法之事 不可盡記也”.

84) 본 논문의 논지와는 상이하게 ‘장만이 원래 친북인계 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조반정 이후에 최명길과의 친분 때문에 서인 정권에서 살아남았을 가능성은 없는가’, ‘실록 등에 강조된 서인계와의 친분은 북인계 몰락의 역사적 상황이 반영되어 왜곡된 것은 아닌가’라는 취지의 지적을 익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받았지만 필자의 역량 및 자료 부족 때문에 더 이상 천착하지는 못했다. 필자의 해석과는 상이하지만 일리 있는 코멘트라고 생각하여 후속 연구를 위해 소개해둔다.

85) 『인조실록』 권1, 인조 1년 3월 乙卯(25일).

86) 이기순, 『仁祖反正』 功臣勢力的 性格, 『백산학보』 38, 1991, 137~142쪽 참조.

87) 『광해군일기』 권180, 광해군 14년 8월 乙亥(12일).

장만의 정계 복귀에 힘을 더했다. 그러나 인조 2년(1624) 1월 21일 직속 부하인 부원수 이괄의 반란은 장만에게 큰 정치적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되었다. 12,000여 명을 헤아리는 叛軍의 신속한 기동에 허를 찔린 관군은 병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를 거듭하여 2월 9일에는 도성을 내주고 말았다.⁸⁸⁾ 난민의 방화로 燒失되는 창경궁의 널름거리는 화염을 보며 인조는 공주로 播遷하였고, 소현세자는 分朝를 이끌고 전주로 향했다. 장만은 최명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괄의 거병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⁸⁹⁾ 자신의 부하였던 자들도 반란에 연루되어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반란에 가담한 巡邊使 韓明璉의 아들 韓閔은 장만의 軍官 출신이었다.⁹⁰⁾

장만의 무능과 비겁을 비난하고 반격을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했지만,⁹¹⁾ 병력면에서 열세였던 그는 반군의 약점을 차분히 파고들었다. 도원수 장만은 관군의 연패를 부하가 아닌 자신의 허물로 돌려 軍情을 다독이는 한편,⁹²⁾ 반군의 귀순을 유도하는 宣撫 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이괄 부대의 軍勢를 크게 약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⁹³⁾ 그리고 반군에서 귀순한 將卒을 관군으로 재편하는 과감한 조치를 단행하였다.⁹⁴⁾ 이러한 결단은 귀순병들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고 참전 의지를 북돋우는 한편 관군의 병력을 증가하는 이중의 효과를 가져왔다. 결국 장만은 정충신의 계책에 따라 2월 11일 한양 서북쪽 길마재 고개, 즉 鞍峴의 결전에서 대승을 거두고 반란을 진압하는 데

88) 이하 서술한 이괄 난의 경과는 허태구, 제3장 『인조반정과 병자호란 이후의 서울』, 『서울 2천년사』 12-조선시대 정치와 한양,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3, 150~158쪽 참조.

89) 『인조실록』 권14, 인조 4년 8월 戊午(19일) “崔鳴吉曰…適變時 臣聞其有反形 密言於張晚 則晚云 豈有是理 終不預備 以致蒼黃之變”.

90) 『승정원일기』 59책, 인조 15년 7월 癸酉(7일) “鳴吉曰 此則雖有此事 而勢有不得縷者矣 且韓閔 曾爲張晚軍官矣 事發之後 閔曰 張使道知此事耶云云 至於丁卯之時 韓一者則到海西 殺戮甚多 韓閔 則不然”.

91) 『인조실록』 권4, 인조 2년 2월 癸巳(9일).

92) 『인조실록』 권4, 인조 2년 2월 戊子(4일) “都元帥張晚 以諸將交戰不利引咎 仍陳召集散卒 入守黃州 以圖再舉之意”.

93) 『인조실록』 권4, 인조 2년 1월 癸未(28일) “賊將柳舜懋 李胤緒 李愼 李珥等 自賊中逃還帥府 其所 領軍兵四千餘人 皆潰散 初張晚聞逆反 與幕僚金起宗 謀所以招誘賊將”; 『인조실록』 권4, 인조 2년 2월 丁未(23일).

94) 『인조실록』 권4, 인조 2년 2월 己丑(5일) “都元帥張晚點閱歸順將卒 凡一千餘人 皆自願從軍擊賊 以 雪久在賊中之恥 遂定將領率 官軍潰散者 亦稍還集 別作一隊 使之立功自贖”.

성공하였다. 안현은 지금의 무악재이다. 張維가 지은 『神道碑』에 실린 아래 일화를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지만 장만에 대한 당대인의 인식을 반영하는 텍스트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없다.

이괄의 변란 때 역적의 첩자가 엿탐하러 왔는데, 공이 그를 붙잡아서 죽이지 않고 침소로 불러들인 다음 앞가슴을 풀어헤쳐 보여주면서 “네가 나를 찌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 그가 굴복하여 공의 명령을 받들겠다고 하였다. 공이 “만약 나를 찌를 수 없다면, 나를 위해 쓰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 그는 感泣하여 “복숨도 바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공이 격문을 써서 그에게 주고, 되돌아가서 역적의 진중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 타이르도록 하였다.⁹⁵⁾

이괄의 난 이후 장만의 정치적 지위는 더욱 탄탄해졌다. 인조는 반란 진압의 공을 인정해 장만을 정승의 반열인 의정부 右贊成에 제수하고 振武功臣 1등에 녹훈하였다.⁹⁶⁾ 뒤이어 정1품의 품계와 함께 玉城府院君의 封號를 하사하고,⁹⁷⁾ 팔도도체찰사에 임명하여 備邊 업무를 총괄케 하였다.⁹⁸⁾ 인조 3년(1625)에는 仁城君 李珙의 처벌을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잠시 파직시켰다가 금방 복직시켰다.⁹⁹⁾ 인조 4년(1626)에는 병조 판서까지 겸임시켰다.¹⁰⁰⁾ 당시는 거듭된 정변 속에서 노련하고 유능한 무장들이 많이 제거되었고¹⁰¹⁾ 軍心の 동요 또한 적지 않았다.¹⁰²⁾ 아울러 후금의 위협과 모문룡의 주둔으로 인한 여러 외교·군사적 현안도 산적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땅한 대안이 없었던 집권 세력은 군 내외의 신망이 두터웠던 장만을 선택함으로써

95) 張維, 『谿谷集』 권13, 碑銘 「玉城府院君張公神道碑銘 并序」.

96) 『인조실록』 권5, 인조 2년 3월 己未(5일); 『인조실록』 권5, 인조 2년 3월 壬戌(8일).

97) 『인조실록』 권7, 인조 2년 9월 辛巳(30일).

98) 『인조실록』 권7, 인조 2년 10월 戊子(7일).

99) 신병주, 앞의 논문, 2013, 31쪽.

100) 『인조실록』 권11, 인조 4년 2월 乙酉(12일).

101) 成大中, 『青城雜記』 권3, 「醒言」, “鄭忠信既克鞍峴之戰 却坐太息曰 戰則幸捷矣 然去年誅朴燁 今年誅李适 北虜使誰禦之 將相有此心 然後方可以壽國”.

102) 『인조실록』 권4, 인조 2년 2월 癸丑(29일) “晩曰近來武將輩 多有疑懼之心 不得自安 惟當誠心待之 俾無疑阻可也 上曰 予亦欲如此 諸將之被誣告者 予皆不信 至於賊适 少不猜疑 而渠自負予耳”.

동요하는 軍情의 구심점으로 삼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인용한 장만의 卍記를 비롯한 여러 사료가 勇將이라기보다 德將에 가까운 장만의 지휘 스타일과 당시 그가 군 내외에서 받던 重望을 공통적으로 증언한다.¹⁰³⁾ 그에 대한 부정적 사료마저 이괄의 란 이후 그의 정치적 지위 격상에 이에 대한 世人의 嫉視를 보여주는 것 같아 흥미롭다.¹⁰⁴⁾

玉城府院君 장만이 졸하였다. 장만의 자는 好古인데 儀表가 흰출하고 재예가 通敏하였으며 관직에서 일을 처리함이 물 흐르 듯하였다. 특히 軍務에 밝아 여러 번 兵權을 쥐었고 元帥에 제수되기에 이르렀는데 깊이 군사들의 심복을 받았다. 역적 이괄의 변란에는 元帥로서 적병을 뒤쫓아 안현에서 적을 섬멸한 뒤에 元勳에 策錄되었는데, 卍함에 미쳐 장수와 사졸들이 추모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¹⁰⁵⁾

위와 같은 인조의 굳건한 지지를 바탕으로 장만은 국방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고 그 시행에 주력하였다. 그 첫 번째는 安州城 重鎭論과 강화도 保障論이었다. 당시 후금과의 충돌시 조선의 군사력 우세를 예상한 인물은 국왕은 물론이요 문·무 신료를 가리지 않고 거의 없었다. 조선은 兵器와 軍馬, 養兵과 軍糧, 병사 개인의 전투력, 지휘관의 통솔력, 종합적 전투력 등에서 열세에 처해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찍부터 고심하였다. 따라서 적군이 공격하기는 어려우나 아군이 방어하기는 쉬운 要害處에 견고한 성을 수축하여 銃砲 등으로 후금의 鐵騎를 방어한다는 淸野入保策을 주된 방어 전술로 채택하였다.¹⁰⁶⁾ 각 지역의 방어 거점에 병력과 백성들을 결집시켜 籠

103) 『인조실록』 권6, 인조 2년 6월 丙午(24일) “引見大臣備局諸宰 上曰 國家不幸 元帥病重 今若遞改誰可代者 左議政尹昉曰 張晚受命已久 且得將士之心 代領甚難”; 『인조실록』 권7, 인조 2년 10월 甲申(3일) “上曰 此任係國安危 未知誰可任者 欽曰 李貴金塗張晚 皆是勳業重望 請擇於斯三者 上曰 張晚何如 欽曰 晚慣知軍情 領略邊事 其才智不出於貴塗之下 且得將士心 軍旅之事 一以委之可矣”.

104) 『인조실록』 권12, 인조 4년 3월 辛未(28일) “兵曹判書張晚 以病上筭辭職 上不許 【史臣曰 晚爲人多智 行事不正 廢朝時攀援宮禁 恩寵隆盛 至拜兵曹判書 且參廢母庭請 儕流賤之 反正後 以崔鳴吉之婦翁 獨免罪罰 適變時 難免逗留之罪 而聖度包容 至冊元功 兼拜八道都體察使兵曹判書 物議皆不怗 而晚猶不知自慎 第宅連雲 苞苴盈門 識者唾鄙】”.

105) 『인조실록』 권21, 인조 7년 11월 丙申(15일).

106) 허태구, 『병자호란과 예(禮), 그리고 중화(中華)』, 2019, 89~117쪽 참조.

城持久하는 사이, 국왕은 신속히 정해진 保障處로 대피하여 각 도의 勤王軍을 조발하여 적군의 기아와 피로를 가중시켜 격퇴하는 것이 전술의 골자였다.¹⁰⁷⁾

그러나 문제는 軍政의 문란과 物力の 부족으로 인하여 서북변의 여러 방어 거점에 충분한 전력을 증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관서 지역의 병력은 만성적으로 부족했고, 下三道 등지에서 병력을 차출하는 조치는 民力の 고갈을 이유로 신료들의 비난을 받거나 중지되기 일쑤였다.¹⁰⁸⁾ 아울러 서북변으로 원거리에서 赴防하는 他道 병력의 군량을 대는 일은 더욱 큰 부담이었다. 東江鎭의 明軍과 遼民에 대한 보급은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¹⁰⁹⁾ 명의 세력이 퇴조하고 조선에 협조적인 藩胡가 누르하치에 의해 병합된 상황 속에서 이전처럼 서북변의 강변을 따라 늘어선 작은 鎭堡나 口子에서 국가 규모로 성장한 후금의 鐵騎를 효율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¹¹⁰⁾ 따라서 소규모 군사 요새를 통합한 뒤 적군의 침입이 예상되는 통로에 견고한 방어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다. 그러나 여러 사회경제적 폐단이 산적한 조선은 충분한 군사력을 보강할 만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장만은 방어의 효용이 감소한 殘堡를 폐지하는 한편,¹¹¹⁾ 安州城을 重鎭으로 만들어 이 곳에 서북변의 전력을 집중한 뒤 후금군을 방어해야 한다고 시종일관 주장하였다.¹¹²⁾ 안주성은 평지성이었으나 청천강 배후에 위치한 천혜의 지형으로 영변과 안주 사이의 좁고 긴 통로는 방어에 매우 용이하였다.¹¹³⁾ 더욱이 의주에서 출발하는 義州大路와 창성·벽동에

107) 李貴 著·安邦俊 編, 『默齋日記』 권3, 『備禦論辨』 “乙丑…八月廿七日 上引見公…公曰…凡禦敵之道 賊未犯境 東西南北各守其地 而及其犯境 次次調入 乃其常算”.

108) 『인조실록』 권7, 인조 2년 12월 壬寅(22일) “晚對曰 上年則南軍多數入防 而今年則通計一道 添防之數 不滿一萬 故已令黃海四千之兵 追後赴防 而猶未免零星 若添南兵 又患乏餉 到此地頭 實無善策”; 『인조실록』 권9, 인조 3년 5월 辛未(24일): 『인조실록』 권9, 인조 3년 6월 壬午(6일) 등.

109) 허태구, 앞의 책, 2019, 51~52쪽 참조.

110) 노영구, 『조선 후기 평안도지역 內地 거점방어체계』, 『한국문화』 34, 2004, 237~238쪽.

111) 『광해군일기』 권25, 광해군 2년 2월 戊申(2일).

112) 『인조실록』 권9, 인조 3년 6월 乙未(19일) “上朝講孟子于資政殿…晚曰 平安兵使宜進駐安州 而廟堂欲以龜城爲兵使所守之地 似是失計”.

서 출발하는 內陸直路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였다.¹¹⁴⁾ 장만의 의견은 후금 방어의 거점으로 강변보다 내지를 더 중시한 것으로,¹¹⁵⁾ 김류 역시 안주성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었다.¹¹⁶⁾ 강화도와 남한산성 保障論에 대해서도 장만은 전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¹¹⁷⁾ 후자의 축성을 주장하는 논자들의 구상은 유사시 국왕은 江都로, 元子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掎角의 형세를 이루며 상호 보완해야 한다는 전략이었다.¹¹⁸⁾ 강화도의 경우 후금 기병의 상륙이 어렵고 해상으로 내륙과 통선이 가능한 장점이 있었던 반면에, 서쪽으로 치우친 입지로 인해 전국에서 오는 勤王兵과 연통하기에는 남한산성이 더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반면 장만은 부족한 물력으로는 두 곳 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우므로 우선 강화도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¹¹⁹⁾ 즉 한정된 전력을 집중해야만 勝算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인데, ‘방어하지 않은 곳이 없다면 취약하지 않은 곳도 없다 [無所不備則無所不弱]’는 것은 그의 오랜 지론이기도 하였다.¹²⁰⁾ 이와 같은 차원에서 장만은 下三道 병력의 관서 지역 부방 역시 많은 폐단에도 불구하고 쉽게 중단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시종일관 주장하였다.¹²¹⁾

장만과 달리 이귀 등은 안주에 전력을 집중할 경우 청천강 이북 방어에 큰 공백이 생겨 無人之境과 다름없이 되므로 서북변의 鎭管이나 山城 곳곳에 전력을 분산·배치하여 방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¹²²⁾ 청천강 이북 지

113) 『인조실록』 권10, 인조 3년 9월 戊申(3일) “上書講孟子于資政殿…晚日 平安道地形 山勢連亘 寧邊安州之間 隘如蜂腰 賊兵自江邊來者 必由此路 須先築安州城 以爲控禦之地 可無患矣”.

114) 노영구, 앞의 논문, 2004, 240쪽.

115) 장정수, 『병자호란 이전 조선의 對後金(淸) 방어전략의 수립 과정과 그 실상』, 『조선시대사학보』 81, 2017, 71쪽.

116) 『인조실록』 권2, 인조 1년 7월 辛卯(3일) “上御文政殿 引對諸臣…上曰 寧邊與安州 孰爲近邊 鹽日由昌義至安州 乃是直路 若僻處寧邊 則賊過安州 必未及知之 若欲擇守要衝之地 無過安州”.

117) 張晩, 『洛西集』 권4, 議 “江都保障便否議” “近日以保障爲言者 必以江華爲先 大小人心之所同然 臣愚之意 亦以爲倉卒避兵 無逾於此地 蓋長江有天塹之險 匪舟楫非馬兵之利涉 南北之聲援可通 父母之籲呼孔邇 若能預爲之所 而臨時移入 則必不至於顛頓狼狽”.

118) 『인조실록』 권5, 인조 2년 3월 己未(5일) “夕 上又御資政殿 引見三公及備局諸臣…元翼曰…江都保障之策 專委李聖求 而江都一偶 似難號令 域中如有事變 元子入南漢山城 則庶可居中節制”.

119) 『인조실록』 권5, 인조 2년 3월 己未(5일) “夕 上又御資政殿 引見三公及備局諸臣…右贊成張晩曰…避胡之策 當以江都爲主 若兩處並舉 則恐力分而事未易就也”.

120) 張晩, 『洛西集』 권2, 疏筭 “論北關民瘼兼陳機務筭 昏朝時”.

121) 『인조실록』 권5, 인조 2년 3월 己未(5일); 『인조실록』 권9, 인조 3년 5월 辛未(24일) 등.

역 백성들의 견고한 入保處를 마련하여 장기전을 벌이는 한편,¹²³⁾ 중진 안주성이 함락될 경우 일대가 붕괴되는 것을 막자는 의도였다. 아울러 안주보다 좀 더 북쪽의 龜城과 寧邊 등지를 선호하여 강변의 방어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는데,¹²⁴⁾ 구성의 궁벽한 위치와 허술한 방어 시설로 인해 장만 등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¹²⁵⁾ 이귀는 압록강 結氷 전후 후금의 침입을 대비해 관례적으로 실시된 남도 지역 병력의 잦은 부방도 민력의 고갈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관철시켰다.¹²⁶⁾ 아래 사료는 장만과 대비되는 이귀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이제 만일 一國의 힘을 통틀어 전적으로 요지의 한 성만을 지켰다가 만일 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 한 진을 격파한 여세로 인하여 쉴 새 없이 몰아닥쳐 마치 무인지경을 들어오는 듯한 것입니다. 연전에 역적 이괄의 변란이 또한 경험이 됩니다. 대체로 적을 방어하는 방법은 적이 국경에 침범하지 않았을 때는 동서남북이 각각 그 땅을 지키다가 적병이 국경에 침범했을 때엔 차츰차츰 조발하여 들어오는 것이 정상의 계책이고, 적이 침범해 오기도 전에 먼저 먼 곳에 있는 군사를 출동해서 근본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¹²⁷⁾

한정된 전력 자원 아래 양쪽 다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었지만, 심하 전

122) 『인조실록』 권3, 인조 1년 9월 己丑(2일) “上夕講大學衍義于文政殿 右贊成李貴曰…且鎖管之法亦可整理 盡罷僉萬戶營堡 使之咸聚鎖管 以守可守之地 則此賊可禦也”.

123) 趙翼, 『浦渚集』 권3, 疏 十一首 『論西邊事宜疏 丙寅』 “故臣之愚意 謂且撤昌朔等地鎖堡兵民 其近西者入於義州 近東者入於江界滿浦 大鎖之人 退至龜城寧邊等內地可防守之處而空其地 如是則虜雖來 我兵無所害 且無所得食 勢難久留 諸處防守 各得添兵 兵多守固 且此賊志專西犯 雖或分兵出來 必不爲久住之計 遠來糧盡 諸城各得固守 不易得利 則其勢必速還矣”.

124) 장정수, 앞의 논문 2017, 71~72쪽 참조.

125) 『인조실록』 권9, 인조 3년 6월 乙未(19일).

126) 『인조실록』 권9, 인조 3년 6월 壬午(6일); 李貴 著·安邦俊 編, 『默齋日記』 권3, 『備禦論辨』 “乙丑六月初二日 體察使張晩爲防秋 請入南軍三千 公於筵中 力陳其不可 又上箚條陳其七害 上答曰 省箚具悉 箚辭當議處 其後竟從公議 不爲調發”.

127) 李貴 著·安邦俊 編, 『默齋日記』 권3, 『備禦論辨』 “乙丑…八月廿七日 上引見公…公曰…臣自反正初 請於關西復設鎖管 各守其地 不徵南軍募鍊土兵 爲當今第一計 故臣累請自往料理 而聖明終不允許 今宜採用此策 而修築諸處山城 使各邑守令 率其民入守 以爲據險清野 以主待客可也 今若合一國之力 專守當路一城 而不能當禦 則因其破一鎖之勢 長驅不已 如入無人之境 年前适賊之變 亦可以驗矣”.

투시 포로로 붙잡혔다가 귀환한 도원수 강홍립의 從事官 李民寔의 술회처럼 후금군이 산성 방어마저 무력화하는 막강한 攻城 능력마저 보유하고 있다면, 정묘호란 때처럼 山城이든 安州城이든 간에 조선군의 허약한 종합 전력만으로는 성공적 방어를 장담하기는 어려웠다.

나는 만 번 죽어야 할 처지에서 망명되어 가슴 속에 품은 회포가 있어 삼가 여섯 조목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첫째, 산성을 수축하는 일이다. 내가 오랑캐 도적들을 보건대, 모두 100여 차례 이상 전투를 겪었고 돌격하는 데 장기가 있어 평원의 평탄한 지형에서는 결코 그들과 전투를 할 수 없다. 성을 공격하는 기구도 또한 매우 우수하여 아주 험한 곳에 쌓은 산성이 아니면 방어할 수가 없다. 마땅히 변방의 要害處 가운데 적병이 공격할 만한 지형을 잘 선택하여 험한 곳에 쌓을 쌓고 군량을 많이 비축하여 필사적으로 지킬 계획을 세워야 한다.¹²⁸⁾

아울러 서북변과 관서 지역의 방어 거점을 후금의 기마병들이 그대로 지나쳐 근왕병이 집결하기 전에 도성과 보장처를 포위·공략할 경우에도 조선은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 만약 병자호란 때처럼 전투력이 뛰어난 적군이 대병력을 순차적으로 동원하여 도성이나 보장처 주변으로 집결시킨다면 조선군의 반격이나 퇴로 차단이 우려 역시 무마시킬 수 있었다.¹²⁹⁾ 게다가 인조 정권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약한 군사 재정 때문에 견고한 축성과 풍부한 병기의 비축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¹³⁰⁾ 반정 직후 인조와 장만이 나는 대화를 보면 후금의 直攻에 대한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려웠던 조선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¹³¹⁾

인조: 이 적은 기동력이 좋아 매우 신속하게 침입해 오는데 遠道의 군사가 집결

128) 李民寔, 『紫巖集』 권6, 雜著 『建州聞見錄』.

129) 허태구, 『仁祖代 對後金(對淸) 방어책의 추진과 한계 - 守城 전술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61, 2012, 99~106쪽; 구범진, 『병자호란, 흥타이지의 전쟁』, 까치, 2019, 73~115쪽 참조.

130) 허태구, 앞의 책, 2019, 102~105쪽.

131) 『인조실록』 권1, 인조 1년 4월 辛巳(22일).

되기 전에 깊이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장만: 형세를 살펴 임기응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킬 만하면 지키고 싸울 만하면 싸우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장만이 주력한 두 번째 군비 강화책은 號牌法の 추진이었다. 軍役 제도의 만성적 문란과 과도한 노비 인구가 병역 자원의 심각한 부족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¹³²⁾ 호패법은 16세 이상의 모든 男丁에게 신분제에 따라 호패를 발급하여 지참하게 함으로써 避役者를 색출하는 한편, 거주지별 인구와 군역을 포함한 國役 부과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한 시도였다.¹³³⁾ 광해군 1년(1609) 12월 19일 군비 증강을 건의하는 함경도 관찰사 장만의 치계로 촉발된 호패법 추진은 安民을 주장한 반대 여론에 시달리다가 광해군 4년(1612)년 7월 완전히 폐기되었다.¹³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호패법을 강력하게 추진한 자들 가운데 다수는 집권 세력인 북인계가 아니라 이항복, 이정귀, 黃愼, 김류와 같은 서인계였다는 사실이다.¹³⁵⁾ 이항복을 정점으로 한 이들은 대개 군사나 재정 업무를 본 경험이 풍부한 자들이었다.¹³⁶⁾ 물론 이들 외에 박승중, 李德馨, 李元翼과 같은 비서인계 인물들도 호패법 추진을 반대하지 않았다.¹³⁷⁾ 당시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한 호패법 시행이 봉당을 초월해 공감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호패법 시행을 반대한 자는 대사간 李爾瞻의 영향력 안에 있는 언관들이었다.¹³⁸⁾ 광해군 11년

132) 허태구, 앞의 책, 2019, 42쪽.

133) 광해군~인조 대 호패법 추진의 진말에 대해서는 한명기, 「광해군 대의 大北勢力과 정국의 동향」, 『한국사론』 20, 1988; 소진형, 「인조의 호패법 시행과정을 통해 본 권력의 정당성 문제와 그 한계」,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7-1, 2018; 이상, 「仁祖代 鄭經世의 經世論 研究」,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9; 설현지, 「17세기 전반 호패법 시행 과정 연구」, 『대구사학』 144, 2021.

134) 소진형, 앞의 논문, 2018, 107~109쪽; 설현지, 앞의 논문, 2021, 6~13쪽 참조.

135) 한명기, 앞의 논문, 1988, 295~297쪽; 『인조실록』 권9, 인조 3년 7월 辛亥(5일) “上朝講孟子于資政殿…知事金瑩曰 廢朝初年 亦欲行此法 其時臣亦爲郎廳矣”.

136) 율곡 이이의 更張·變通論과 인조 대 집권 서인 세력의 호패법 추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김용흠, 『朝鮮後期 政治史 研究 I - 仁祖代 政治論의 分化와 變通論』, 해안, 2006, 191~195, 312~319쪽 참조.

137) 허태구, 앞의 논문, 2019, 262쪽; 설현지, 앞의 논문, 2021, 12쪽; 『광해군일기』 권37, 광해군 3년 1월 辛亥(10일).

(1619) 3월의 심하전투 전후 그 누구보다도 후금에 대해 강력한 척화론을 주장한 이이첨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군비 강화를 목적으로 한 호패법 시행에는 安民을 명분으로 반대하였던 것이다.

인조반정을 계기로 조정에서 축출되었던 서인계가 대거 복귀하고 후금과 모문룡의 충돌로 여전히 서북변의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다시 한 번 호패법 시행이 추진되었다. 반정 이후 처음으로 군비 강화를 위한 호패법 시행을 건의하였던 신료는 柳永慶의 黨餘였던 소북계 柳公亮과 남인계 鄭經世였다.¹³⁹⁾ 곧이어 호조 판서 李暿 역시 호패법 시행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¹⁴⁰⁾ 민의 부담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신증론이 대두하거나,¹⁴¹⁾ ‘호패·軍籍·量田중 어떤 것을 먼저 시행하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으나,¹⁴²⁾ 인조 3년(1625) 7월 衆論의 지지를 받은 호패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하여 팔도에 그 시행을 선포하였다.¹⁴³⁾ 주무 관청인 號牌廳의 堂上으로는 장만을 비롯하여 이정귀, 이서, 최명길, 沈悅, 徐滄, 金自點이 임명되었다.¹⁴⁴⁾

호패법 시행의 찬·반과 관련하여 장만의 경우 뚜렷한 의사를 표시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그의 前歷을 고려해 볼 때 호패법 시행에 강력한 지지를 보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찍이 함경도 관찰사·도원수·도체찰사를 역임하며 병역 자원의 부족을 절감하였던 그가¹⁴⁵⁾ 군제 개혁의 필요성에 조정의 어느 신료들보다도 공감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138) 『광해군일기』 권36, 광해군 2년 12월 丙申(25일).

139) 『광해군일기』 권1, 인조 1년 4월 甲申(25일).

140) 『인조실록』 권2, 인조 1년 5월 丙申(7일) “上朝講于文政殿…暿曰 號牌實是良法 宜先立三條之令 行會八方 所謂三條之令 其一 申明歷良爲賤之律也 其二 令流民各還其故鄉 而如有仍留者聽 其三 凡京外閑良 各令自處其身 皆屬相當軍役 上曰 此言是矣”.

141) 『인조실록』 권3, 인조 1년 9월 辛丑(14일).

142) 『인조실록』 권9, 인조 3년 7월 壬子(6일) “時 李貴主號牌之議 戶曹判書沈悅 建量田之計 兵曹判書徐滄 請行軍籍 各執己見 有若爭訟”.

143) 『인조실록』 권9, 인조 3년 7월 丙寅(20일) “上乃命政院 下諭于八道監司曰 國無見兵 軍皆虛簿 逃故既除 充定宜急 號牌之法 所不可已”.

144) 『승정원일기』 7책, 인조 3년 7월 壬申(26일).

145) 張晩, 『洛西集』 권2, 疏筭「論北關民瘼兼陳機務筭 昏朝時」; 『洛西集』 권2, 疏筭「論胡書答送事宜 仍陳所懷筭」; 『洛西集』 권4, 啓辭「請新恩赴防謀免人等 無遺入送啓」 등.

도체찰사 장만은 인조 4년(1626) 2월 병조 판서까지 겸직하게 됨으로써 호패법 시행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¹⁴⁶⁾ 병조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병적을 관리하는 일로 호패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¹⁴⁷⁾ 병조 판서가 된 장만은 다양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號牌御使를 팔도에 파견하여 호패법 시행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朝宗의 法例에 따라 落講校生을 軍保로 充定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¹⁴⁸⁾ 두 사안 모두 호패법 시행과 관련된 가장 민감한 사안임을 염두에 둔다면 그는 호패법 시행론자 가운데에서도 가장 적극적 부류였다고 간주해도 무리가 없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장만 역시 徐滄의 발언대로 호패법이야말로 조선의 富國強兵을 구현하는 근본적 방안이라 여기고 있었음에 틀림없다.¹⁴⁹⁾ 반면 서인계의 산림 金長生, 남인계의 산림 張顯光, 남인계의 원로인 이원익 등은 民力을 고갈시키고 士族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다는 이유로 호패법 시행을 반대하였다.¹⁵⁰⁾ 이이첨과 유사하게 김장생 역시 정묘호란 직후 주화론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척화론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한 인물이었다.¹⁵¹⁾

인조 5년(1627) 1월 발발한 정묘호란의 전황은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보완되지 못한 조선군의 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내었다.¹⁵²⁾ 병력과 장비 면에서 열세였던 서북변과 관서 지역의 방어 거점은 후금군에 의해 차례로 점령되었다. 특히 가장 전력이 충실하다고 평가받은 안주성이 단 하루 만에 함락된 것은 큰 충격이었다.¹⁵³⁾ 후금군의 공격을 받은 모문룡은 일찌감

146) 『인조실록』 권11, 인조 4년 2월 乙酉(12일); 『인조실록』 권13, 인조 4년 7월 己丑(19일) “大臣請以兵曹判書張晩參議尹履之號牌廳有司堂上李曙崔鳴吉 仍存旬管 以責成效 其餘則並減省 從之”.

147) 『인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丁未(28일) “定文武百官之制…兵曹 掌武選兵籍郵驛等事”; 『광해군일기』 권21, 광해군 1년 10월 戊午(10일).

148) 『인조실록』 권13, 인조 4년 7월 庚寅(20일) “上御資政殿月廊 引見左右相昇平府院君金瑬延平府院君李貴兵曹判書張晩戶曹判書金蓋國完城君崔鳴吉 議號牌事…校生落講者 李貴則欲稱以武學 不即定軍 而張晩以爲不可”; 『인조실록』 권14, 인조 4년 8월 戊午(19일) “上畫講孟子于資政殿月廊…晚與鳴吉 又陳號牌御史 不可不速遣之意”.

149)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3월 己卯(12일) “徐滄請對曰…號牌文籍 既已焚之 自此之後 安能號令百姓乎 人皆謂 臣主張號牌 而臣之本意 只在於富國強兵 今至於此 可勝痛哉”.

150) 이상, 앞의 논문, 2019, 29~30쪽; 소진형, 앞의 논문, 2018, 111~113쪽 참조.

151) 金長生, 『沙溪遺稿』 권9, 『筵席 問對』 丁卯三月初八日 “某日 今番和事 雖出於爲 宗社生靈之計 而其間斥和之議 不可無也 其言雖或過激 不可不優容矣”.

152) 이하 서술한 정묘호란의 전황에 대해서는 허태구, 앞의 책, 2019, 105~111쪽 참조.

치 身彌島로 도주하여 꿈쩍도 하지 않았으며,¹⁵⁴⁾ 中原의 明軍도 적절한 타이밍에 지원군을 파견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었다.¹⁵⁵⁾ 江都로 피난 간 조정은 반격을 모색하였지만 정작 도원수 장만의 휘하 병력은 얼마 되지 않았다.¹⁵⁶⁾ 한강과 임진강 등지의 조선군은 군량이 제 때에 보급되지 않아 굶주렸고,¹⁵⁷⁾ 탄약의 보급마저 원활하지 않았다.¹⁵⁸⁾ 이러한 와중에 군비 증강을 목표로 어렵게 추진하였던 호패법마저 서둘러 폐기되고 많았다.¹⁵⁹⁾ 관군이 연이어 무너지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호패법 시행으로 등을 돌린 土族들의 마음을 달래어 義兵 봉기를 유도하기 위한 조정의 苦肉之策에서 나온 조치였다. 군비 증강과 민생 안정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 아래 표류하였던 당시 조선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불리한 전황을 끝내 극복하지 못한 조선은 후금과 형제 맹약을 맺고 전쟁을 종결하기에 이른다.

인조 5년(1627) 3월 中風에 걸린 장만은 사직을 요청하여 교체되었다.¹⁶⁰⁾ 같은 해 7월에는 패전의 책임을 지고 유배길에 올랐다가 11월에 解配되었다.¹⁶¹⁾ 그러나 일방적 패전과 다름없는 정묘호란의 결과 때문에 오랜 동안 軍務를 총괄한 도체찰사겸 병조 판서 장만에 대한 불만은 한동안 가라앉지 않았다.¹⁶²⁾ 유배지에서 돌아온 장만은 다시금 후금 방어의 일선에 복귀하지 못한 채 인조 7년(1629) 11월 15일 64세의 나이로 한양의 盤松里 자택에서 운명하였다.¹⁶³⁾ 실록의 史論은 장만을 가리켜 임금을 버리고 도주한 무능한 장수라는 취지로 격렬히 비난했지만 조정의 여러 신료들이 민생 안정을 명분

153)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1월 壬辰(24일) “張晚金起宗等馳啓曰 安州以積年專力之地 又被陷沒 平壤以東諸城 莫不奪氣 一死之外 更無可爲”.

154) 趙慶男, 『續雜錄』 권2, 丁卯年(1627) 1월 21일.

155) 허태구, 앞의 책, 2019, 81~82쪽.

156)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1월 乙酉(17일); 『인조실록』 권15권, 인조 5년 2월 甲辰(7일).

157)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2월 己未(22일) “大臣備局諸臣 請對入侍…昉及吳允謙曰 漢江臨津兩處糧餉已盡 若過十日 必有自潰之患 鄭忠信之軍 繼糧無策 尤可慮也”;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2월 壬寅(5일).

158)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1월 己丑(11일);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2월 辛酉(24일).

159) 호패법 폐기의 전말에 대해서는 허태구, 앞의 책, 2019, 52~56쪽 참조.

160)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3월 辛卯(24일).

161) 『승정원일기』 18책, 인조 5년 7월 辛未(7일); 『인조실록』 권17, 인조 5년 11월 壬午(19일).

162)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3월 癸巳(26일); 『승정원일기』 18책, 인조 5년 8월 甲戌(27일) 등.

163) 신병주, 앞의 논문, 2013, 36쪽.

으로 군비 증강에 소극적이었던 점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¹⁶⁴⁾ 시늬만 낸 짧은 유배 기간과 장만의 행보가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인조의 변호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¹⁶⁵⁾ 패전의 중차대한 책임을 오로지 그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후금의 군사력에 충분히 대항할 만한 조선의 군비 증강은 정치·사회·경제적 제 문제와 연동되는 구조적인 현안이었고, 그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이 난제를 단칼에 해결한 방안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이 당시 조선이 처한 현실이었기 때문이다.¹⁶⁶⁾ 정묘호란 당시 현직 재상에게 보낸 장만의 걱정적 서찰은 바로 이러한 정황을 잘 보여준다.

이 오랑캐 적군이 비록 강성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千乘의 나라로서 어찌 막아낼 방도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에는 우리나라의 조정이 국방을 제3·4 순위의 일로 여기면서 한갓 실제 없이 걸만 번드르르한 임시방편으로 한창 일어나는 오랑캐를 막으려고 합니다. 병졸은 평소애 훈련을 시키지 않았고 장수는 사람을 잘 가려 뽑지 않은 채로 있다가, 변란이 생긴 뒤에야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을 내몰아 적을 막게 합니다.¹⁶⁷⁾

4. 맺음말

본 논문은 이상과 같이 선조 대부터 인조 때까지 최고위급 군사·외교 전문가로 활약하였던 장만의 군사 활동과 이와 연관된 정치적 위상의 변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각 왕대별 장만의 군사 활동과 정치적 입지의 변화 요인 등을 살펴보면서, 그가 주장하거나 시행하려고 한 군비 강화책의 특징은

164) 『인조실록』 권17, 인조 5년 11월 壬午(19일) “史臣曰 張晩 一貪猾之人耳…及至賊奴東搶 又受出禦之命 而遁避山谷 前後忘君 僨事之罪 宜置極典 而略施付處之律 未滿數朔 宥命旋下”.

165)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2월 甲辰(7일) “大臣備局堂上請對 乃引見…張維曰 西路四將 兵不滿五千 殊極寒心 上曰 兵力如此 朝廷以爲 張晩不降則走 宜將士之解體也”.

166) 허태구, 앞의 책, 2019, 115~117쪽 참조.

167) 張晩, 『洛西集』 권4, 書 「與時宰 或云與遲川崔相公」.

무엇이었는데도 함께 탐구해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만이 정치적 격변기에 오랜 동안 견재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우선 거론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원만한 성품과 실무 능력이다. 서인계와 가까웠기는 했지만 정치적으로 모난 행보를 보이지 않았던 그의 성향은 광해군 대 북인계가 득세하는 와중에서도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던 하나의 동력이 되었다. 아울러 변방 수령으로서 풍부한 현장 경험과 빈틈없는 일처리 능력은 그의 출세에 遠因이 되었다. 그는 이를 발판으로 광해군 대 궁궐영건 사업의 핵심 신료로 활동하였으며, 심하 패전 이후에는 체찰 부사에 임명되어 혼란에 빠진 서북 지역의 군정·민정·외교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서인 대 부분이 축출된 상황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병조 판서의 자리까지 올랐다.

반정에 불참했던 그의 행적은 인조 즉위 이후 걸림돌이 될 뻔 했지만 사위 최명길 등과의 친분으로 극복하였고, 곧이어 터진 이괄의 난을 성공적으로 진압함으로써 그의 정치적 지위는 이전보다 훨씬 더욱 공고해졌다. 연이은 정변으로 경험 많은 고위급 무장들이 제거된 상황 속에서 군부의 신망과 지지를 받던 그에 대한 정권의 의존도는 더욱 증가하였다. 도원수·도체찰사·병조 판서를 역임한 장만은 여러 가지 군비 강화책을 주장하였다. 그는 한정된 군사 자원의 효율적 투입을 위해 안주성과 강화도를 국방 강화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아울러 병역 자원의 부족이라는 근본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호패법 시행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나 장만을 비롯한 인조 정권의 담당자들이 애써 추진한 군비 강화책은 후금의 침략을 방어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이러한 군비 증강이 성공적으로 달성되려면 軍制뿐 아니라 조세, 재정, 신분제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의 폭 넓은 개혁이 수반되어야 했지만, 당대의 정치·사회적 환경 하에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단기간 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용이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장만 개인의 역량과 책임을 넘어서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그의 대외인식과 대중국 외교현안에 대한 대응 등은 別稿를 통하여 발표하였다.¹⁶⁸⁾

168) 허태구, 「張晩의 대외정세 인식과 대중국 외교현안 대응」, 『대구사학』 146, 2022.

■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승정원일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金長生, 『沙溪遺稿』,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成大中, 『靑城雜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李 貴 著 · 安邦俊 編, 『默齋日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李肯翊, 『燃藜室記述』,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李民寅, 『紫巖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중세사료강독위원회驛, 『책중일록-1619년 심하 전쟁과 포로수용소 일기』, 서해문집, 2014.
- 張 晩, 『洛西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위원회譯, 『洛西集 번역본』, 장만장군기념사업회, 2018.
- 張 維, 『谿谷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趙慶男, 『續雜錄』,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趙 翼, 『浦渚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車天輅, 『五山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崔鳴吉, 『遲川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구법진,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 까치, 2019.
- 김용흠, 『朝鮮後期 政治史 研究 I - 仁祖代 政治論의 分化和 變通論』, 해안, 2006.
- 백상태 · 장석규, 『문무겸전의 전략가 - 장만(張晩) 평전』, 주류성, 2018.
- 장석규 편, 『팔도도원수 장만장군』, 도서출판 기창, 2009.
- 장석규, 『광해의 중립외교와 장만장군 - 조선 전쟁시대 45년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까지』, 보고서, 2019.
- 장정수, 『17세기 전반 조선과 후금 · 청의 國交 수립 과정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허경진 · 심경호 · 구지현 · 계승범 · 박제광 · 신두환 · 권혁래 · 김준, 『낙서 장만 연구』, 보고서, 2020.
- 허태구, 『병자호란과 예(禮), 그리고 중화(中華)』, 2019.
- 계승범, 『정묘호란의 동인 제고』, 『열상고전연구』 71, 열상고전연구회, 2020.
- 권혁래, 『낙서 장만의 심하전투 관련 차자(箭子) 연구』, 『淵民學志』 34, 연민학회, 2020.
- 김 준, 『낙서 장만 시조의 해석과 수용 양상에 대한 소고(小考)』, 『淵民學志』 34, 연민학회, 2020.
- 노영구, 『조선 후기 평안도지역 內地 거점방어체계』, 『한국문화』 3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4.
- 설현지, 『17세기 전반 호패법 시행 과정 연구』, 『대구사학』 144, 대구사학회, 2021.
- 소진형, 『인조의 호패법 시행과정을 통해 본 권력의 정당성 문제와 그 한계』,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7-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8.
- 신두환, 『낙서(洛西) 장만(張晩)의 상소문 연구』, 『淵民學志』 34, 연민학회, 2020.
- 신병주, 『文武兼全의 인물 張晩, 그 시대와 활동』, 『조선시대사학보』 64, 조선시대사학회, 2013.
- _____, 29장 '위기의 시기, 국방의 최일선에 섰던 장만', 『참모로 산다는 것 - 원공과 신권의 대립 속 실제로

- 조선을 이끌어간 신하들의 이야기』, 매일경제신문사, 2019.
- 심경호, 『낙서와 지천 최명길의 창수(唱酬) 및 지천의 서찰에 관하여』, 『열상고전연구』 71, 열상고전연구회, 2020.
- 이기순, 『“仁祖反正” 功臣勢力的 性格』, 『백산학보』 38, 박산학회, 1991.
- 이 상, 『仁祖代 鄭經世의 經世論 研究』,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9.
- 이성무, 『장만 - 과도기 조선의 병권을 잡다』, 『명장열전 - 나라를 구한 사람들』, 청아출판사, 2011.
- _____, 6장 『장만 장군의 생애와 군공』, 『조선시대인물사』, 지식산업사, 2015.
- 장정수, 『병자호란 이전 조선의 對後金(淸) 방어전략의 수립 과정과 그 실상』, 『조선시대사학보』 81, 조선시대사학회, 2017.
- 한명기, 『광해군 대의 大北勢力과 정국의 동향』, 『한국사론』 20,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8.
- _____, 제2장 『최명길에 큰 영향을 남긴 사람들 - 장인 장만』, 『최명길 평전』, 보리, 2019.
- 홍석주 · 박언근, 『光海君代의 宮闈營建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8-4, 한국건축역사학회, 1999.
- 허태구, 『仁祖代 對後金(淸) 방어책의 추진과 한계 - 守城 전술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61, 조선시대사학회, 2012.
- _____, 제3장 『인조반정과 병자호란 이후의 서울』, 『서울 2천년사』 12 - 조선시대 정치와 한양,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3.
- _____, 『李爾瞻의 斥和論과 對明義理』, 『서강인문논총』 59,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 _____, 『광해군 대 박승종(朴承宗)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인식』, 『한국학연구』 60, 안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 _____, 『張晩의 대외정세 인식과 대중국 외교현안 대응』, 『대구사학』 146, 대구사학회, 2022.

Jang Man(張晩)'s Military Activities and Changes in Political Status

Huh, Tae-koo*

This paper summarizes Jang Man(張晩)'s military activities and achievements by period and examines how his political status has changed. Despite the collapse of most of Seoin(西人系) in the late King Gwanghaegun(光海君)'s reign, Jang Man(張晩) was able to solidify his political position by contributing greatly to the construction of the palace and the settlement of the crisis in Pyeongan-do(平安道) after the defeat of Simha(深河) battle. During the reign of King Injo(仁祖), he faced a crisis for a while due to the outbreak of Yi Gwal(李适)'s insurrection, but his political status rose significantly as he succeeded in suppressing the rebellion with appropriate response. Jang Man(張晩) argued that in order to defend against Hujeeum(後金), limited power should not be distributed, but should be placed first in Anjuseong(安州城) and Ganghuado(江華島). Furthermore, h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Household Recognition Tag law(號牌法) in the early King Injo(仁祖)'s reign to overcome the fundamental crisis of lack of military service resources.

Key words: Jang Man(張晩), Military Activities, Political Status, the Construction of Palaces, the Household Recognition Tag law(號牌法)

논문투고일: 2022년 1월 23일 || 심사완료일: 2022년 2월 14일 || 게재확정일: 2022년 2월 20일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